

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979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8. 22.

이정숙 의원 등 6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5. 8. 29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5. 9. 10.

의회운영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이정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고성군의 청구권자 수에 맞는 주민조례청구 서명 요건을 구체화하고,
-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-1143(2025. 7. 11.)호와 관련 필수 자치법규 정비 현행화 요청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와 청구 각하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청구인의 권익 보호 및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주민조례청구 연서 요건을 900명 이상으로 규정 (안 제3조제1항 개정)
- 2) 회의 규칙의 명칭을 명확히 하여 규정의 일관성을 기함.

(안 제10조제2항 문구 정비)

- 3)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 기간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처리 기한과 대표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,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.

(안 제11조의3 신설)

- 4) 불필요 규정 삭제 (안 제13조 삭제)

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

-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

2)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3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38호

- 예고기간: 2025. 8. 22.(금) ~ 8. 28.(목)[6일간]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래훈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 요건(연서 인원)과 수리·각하 절차를 명확히 하고,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현행화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청구인의 권익 보호 및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주요 개정내용

- 주민조례청구 연서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에서 900명 이상으로 구체화(안 제3조제1항)
- 각하 시 대표자 의견 제출 기회(14일 이상) 부여 및 수리·각하 결정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명확화(안 제11조의3)
- 회의 규칙 명칭 정비 및 불필요 조항 삭제

○ 적정성 및 타당성

- 상위법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적법성 확보
- 기존 규정의 불명확성을 개선하여 주민의 예측 가능성 제고
- 청구요건을 900명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민 이해도 향상 및 실무상 편의성 강화
- 수리·각하 절차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는 청구인의 권익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 강화에 기여
- 각하 예외 규정(서명인 수 현저히 미달 시 절차 생략)은 행정 효율성 확보에 유리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고, 청구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나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9. 10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